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: 제3524호
- 다. 제안일자: 2026. 2. 9.
- 라. 회부일자: 2026. 2. 12.

2. 제 안 사 유

-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 도입을 위한 이용 기준을 추가하고
- 장기간 조례 미개정과 이용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조문의 해석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미운영 시설인 '그 밖의 선박' 조항 삭제(안 별표 2 제1호).
- 나. '테니스장'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신규 시설인 '피클볼장'을 추가(안 별표 2 제2호).
- 다. '강변물놀이장'을 '물놀이장'으로 문구를 수정 및 '전망호텔'은 불필요한 하한액을 삭제하고 상한액만 설정(안 별표 2 제3호).
- 라. 한강공원 내 미설치 시설인 '야외원형극장'과 타 요금제의 적용이 가능한 '야외 무대 사용'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(안 별표 2 제5호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합 의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25.11.20.~12.10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공원이용시설 이용료를 현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 신규 조성된 ‘피클볼장’ 이용료를 추가하며, ‘전망호텔’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3조는 인용 법령 띄어쓰기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고, 안 제17조제1항제10호 역시 법령 체계상 단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.
- 안 [별표 1]과 [별표 2]는 한강공원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‘그 밖의 선박’ 및 ‘야외원형극장’, 하천점용허가로 운영 중인 ‘야외무대’를 공원이용 시설에서 제외하고 ‘피클볼장’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며, 숙박시설인 ‘전망호텔’ 이용료를 1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임.

<전망호텔 이용료 관련 개정 내용>

현행			개정안			
3. 휴양시설			3. 휴양시설			
구분	기준 및 이용료		구분	기준 및 이용료		비고
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)	345,000~ 500,000원	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)	1백만원 이하	<삭제>
		크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 시)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			

현행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체계를 현 운영¹⁾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조성된 피클볼장 이용료²⁾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이용료에 준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.

1) ‘그 밖의 선박’ 및 ‘야외원형극장’은 미운영, ‘야외무대’는 하천점용허가로 운영 중

2) 7,000~11,000원(1회, 2시간 이내)[국내 사설 시설의 경우 15,000원(1회, 1시간 이내) 이상, 파주 공공 시설(기존 배드민턴장 활용)의 경우 8,000원(1회, 2시간 이내)]

‘전망호텔’ 이용료의 경우 동 시설(자립형 민간위탁)의 운영 수지 악화를 사유로 현행 이용료(345~500천원) 규정을 삭제하고 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이용료인 100만원 이하로 단일화하여 조정하고 있는데, 이는 위탁 업체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현행보다 2배 이상의 이용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바,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또한, 방치되었던 한강 교량 시설물을 정비하여 전망호텔³⁾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운영 중단으로 동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위탁자의 안정적 수익성 확보(개선)는 필요할 것이나, 2024년 운영수익 현황 자료를 보면 단기 순이익이 880만원⁴⁾ 발생하고 있어 당장 이용료 인상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.

다만, 2025년부터 서울시 수익 배분률 증가('24년 20% → '25년 이후 50%), 공실률 증가 가능성(인기 하락), 민간 위탁자의 지속적 수익성 확보(개선) 측면에서 현행 이용료 범위(극성수기 제외)를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여 좀 더 유연하게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임.

<2024년 전망호텔 운영수익 현황>

구 분	금액(천원)	비 고
매 출 액	58,255	객실 수입 등
매출원가	746	-
매출총수익	57,509	매출액 - 매출원가
판매비와 관리비	51,291	인건비, 외주용역비, 공과금 등
영 업 수 익	6,217	매출총이익 - (판매비 + 관리비)
영업외 수익	3,578	취소수수료 등
영업외 비용	1,00	기부금 등
단기 순이익	8,796	영업이익 + 영업외이익 - 영업외비용

3) 2024년 6억 7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된 이후 민간위탁(자립형) 방식으로 2024년 5월 13일부터 운영 중

4) 2025년도 영업이익 778만원 전망